

# 표준 정책

정책 번호:           KMT-OGC-01-0001          

개정:   03   페이지:   1 / 2  

제목/타이틀: **글로벌 보복 금지 및 보고 의무 정책**

<p>이 페이지에는 본 정책 또는 업무 지시에 대한 모든 개정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p>	<p>편의를 위해서 본 개정의 성격은 비교란에 간략하게 제공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정책을 검토하여 관련된 모든 변경 사항, 추가 사항 또는 삭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기술되지 않은 한, 본 개정 내용은 수신과 동시에 이행되는 것으로 합니다.</p>
---	---

개정	개정자	페이지	비고
00	PJW	1-2	최초 발행
02	SAR	2	글로벌 정책에 맞도록 갱신 및 포맷 변경
03	SAR	1	업데이트 됨

개정	발행인	승인자	승인 일자
00	폴 J. 워드(Paul J. Ward)	케빈 G. 노베(Kevin G. Nowe)	2012-10-18
01	폴 J. 워드(Paul J. Ward)	케빈 G. 노베(Kevin G. Nowe)	2013-11-01
02	세스 A. 라이스(Seth A. Rice)	케빈 G. 노베(Kevin G. Nowe)	2015-09-04
03	세스 A. 라이스(Seth A. Rice)	미셸 키팅(Michelle Keating)	2017-08-22

## 글로벌 보복 금지 및 보고 의무 정책

### 1. 범위

본 정책은 Kennametal Inc.의 모든 직원, 임원, 이사진 및 본사의 지사와 전 세계 제휴 회사에 적용됩니다(이하, "Kennametal 임직원").

### 2. 도입

Kennametal 윤리 강령은 모든 직원, 임원, 이사진 및 사업 파트너에 본사의 운영 전반에 걸쳐 정착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미리 정하여 이의 수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된 정책입니다.

Kennametal 의 모든 임직원과 사업 파트너는 최고의 신의 및 최고의 윤리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하고 정중한 태도로 사업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3.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우려 사항의 보고

어떤 활동이 본 윤리 강령, Kennametal 의 모든 정책 또는 절차나 여하한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모든 Kennametal 임직원은 즉시 그러한 활동을 회사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법 또는 위반 행위는 회사 경영진, 법률 고문 사무소 또는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사무국 디렉터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되는 보고는 Kennametal 헬프라인 [AT&T 글로벌 접속 전화번호](https://kennametal.alertline.com/gcs/welcome)를 사용하여 1-877-781-7319 로 전화하거나, <https://kennametal.alertline.com/gcs/welcome> 또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https://kennametaleu.alertline.com/gcs/welcome> 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k-corp.ethics@kennametal.com](mailto:k-corp.ethics@kennametal.com) 에 이메일을 전송함으로써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4. 보복 금지

알려진 위반 행위나 의심되는 위반 행위를 신념에 입각하여 보고한 Kennametal 임직원이나 사업 파트너는 학대하거나 고용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은 보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형태의 보복은 본 윤리 강령 및 회사 정책에 대한 위반 행위이며 Kennametal 이 운영되는 대부분의 관할 지역의 경우 위법 행위입니다.

알려진 위반 행위나 의심되는 위반 행위를 신념에 입각하여 보고한 이에게 복수하는 모든 Kennametal 직원, 임원 또는 이사진은 최대 해고를 포함하는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본 정책은 윤리 강령, 모든 회사 정책 또는 절차나 모든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것과 관련된 우려를 제기하는 Kennametal 임직원 및 기타 관련 인사를 보호함으로써 보고에 망설임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5. 신념에 입각한 보고

신념에 입각한 보고, 우려 또는 불만을 제기하는 행동은 조사 완료 후 그것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본 정책에 의해 완전히 보호됩니다.

알려진 위반 행위나 의심되는 위반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이는 반드시 신념에 입각하여 행동해야 하고 보고하는 정보가 실제로 위반 행위라고 믿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이 제출한 보고 및 악의적인 의도로, 또는 거짓 정보임을 알고서 보고한 것으로 증명된 모든 주장은 본 정책의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하며 최대 해고를 포함하는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 6. 위반 보고에 대한 대응

위반 또는 위법 행위에 대한 모든 보고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 지며 조사 결과 사실로 판명된 경우 적절한 교정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알려진 위반 행위나 의심되는 위반 행위를 보고하는 개인은 추후 대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제공하지 않고 익명으로 보고하지 않는 한 조사의 완료와 동시에 적절한 추후 대응 정보를 수신할 것입니다.

## 7. 비밀 보장

위법 또는 위반 행위에 대한 모든 보고는 제출된 우려의 사실 여부를 판별하는 데 필요한 관련 대상자들만 조사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에 대한 비밀이 유지됩니다. 위반 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주장을 보고하는 모든 이는 물론 조사 과정에서 면담 또는 상담에 참여한 모든 이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 연관되었거나 주장된 위법 또는 위반 행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인물은 조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을 지키고 이를 신중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